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342

발의연월일: 2024. 12. 10.

발 의 자:임미애·문대림·박덕흠

박희승 • 윤건영 • 이광희

이기헌 • 이병진 • 이재강

주철현 · 채현일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은 바다와 호수, 하천 등과 접해 있는 육지 부분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8%가 거주하고 있고 국가 기반시설과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해수면 상승이나 태풍으로부터 배후지를 보호하는 등 사회적·경제적·환경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그런데 과도한 연안개발로 인하여 연안 경관이 훼손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연안 침수 및 침식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연안을 보호 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현재 연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연안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연안침식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여러 가지 평가사항 중 일부로서 연안침식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안에

서의 도로 공사 등에 대하여 협의 또는 승인·허가·인가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이 연안의 침수 및 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연안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연안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8 신설).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3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8(연안침수·침식사전검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 협의 또는 승인·허 가·인가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이 연안의 침수 및 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이하 "연안침수·침식검토"라 한 다)하여야 한다.

- 1. 「도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공사
- 2. 「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방사업
- 3.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사업
- 4. 「어촌・어항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 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의 건설사업
- 6.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 7.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 8. 그 밖에 연안의 침수 또는 침식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연안침수·침식검토를 위하여 인력, 시설·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연안침수·침식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연안침수·침식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사 또는 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범위, 연안침수·침식검토의 기준·방법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시기·절차와 제2항에 따른 연안침수·침식검토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 절> 제34조의8(연안침수・침식사전점 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 로 정하는 연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 협의 또는 승인・허가・인가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이 연안의 침수 및 침식에 미치는 영향 사전에 검토(이하 "연안침수・침식검토"라한다)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공사 2. 「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방사업 | 현 행 | 개 정 안 |
|---|-----|---|
| 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사업 4. 「어촌·어항법」 제2조제6 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 | 제34조의8(연안침수·침식사전검 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 여 협의 또는 승인·허가·인 가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공 사 또는 사업이 연안의 침수 및 침식에 미치는 영향 사전에 검토(이하 "연안침수·침식검 토"라 한다)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2조제7호에 따 른 도로공사 2. 「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방사업 3.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 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사업 4. 「어촌·어항법」 제2조제6 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 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의 |

- 6.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 른 하천공사
- 7.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 른 항만개발사업
- 8. 그 밖에 연안의 침수 또는 침식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이 고 전문적인 연안침수·침식검 토를 위하여 인력, 시설·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연안침수·침식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연안침수·침 식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사 또 는 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범 위, 연안침수·침식검토의 기준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연안 침수·침식검토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